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026년 하반기 사무·기술직 신입사원 직무중심 채용공고

시민이 행복한 매력도시 서울을 만드는 도시전문 공기업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직급	직종	채용직무	필수자격 (붙임1)	지원자격(각 호 모두 충족하여야 함)				
6급	사무직 (10명)	경영지원/ 사업관리 (7명)	-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단,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공사 정년 : 만 60세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단, 현역의 경우 단계별 시험 응시 및 임용예정일(2026.12.14.)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 결격사유 (붙임2) - 우리 공사 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인영어성적 자격 기준 <table><tr><th>사무직(일반경쟁)</th><th>기술직(일반경쟁)</th></tr><tr><td>토익 800점, TEPS 309점, 토플 91점 이상</td><td>토익 700점, TEPS 264점, 토플 79점 이상</td></tr></table> - 영어성적은 영어시험 대체와 서류전형을 위한 자격기준으로만 활용 - 영어성적 인정범위 · 모든 어학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일(2026.12.1.)까지 유효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으로, 2024.12.1. 이후에 응시하고 지원서 접수 마감(2026.10.19. 18:00) 이전까지 성적을 발표한 시험에 한함. (단,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한 경우에는 2021.12.1.이후 응시한 어학성적 인정) · 조회 확인이 불가능한 특별시험, 국외응시성적은 불인정 · 개편 토플(6점 만점) 응시자는 성적표에 병기된 기존 점수로 적용 - 공인영어성적은 텡스관리위원회(www.teps.or.kr)에서 최근 작성한 점수 환산표(conversion table)를 적용하여 산정 ※ 청각장애 등으로 인한 듣기점수 적용제외 대상자는 별도 기준 적용 (붙임3) - 고급자격증 소지자(붙임4)는 해당분야 지원 시 공인영어성적 불필요 ◇ 기타 : 임용예정일(2026.12.14.)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사무직(일반경쟁)	기술직(일반경쟁)	토익 800점, TEPS 309점, 토플 91점 이상	토익 700점, TEPS 264점, 토플 79점 이상
		사무직(일반경쟁)	기술직(일반경쟁)					
	토익 800점, TEPS 309점, 토플 91점 이상	토익 700점, TEPS 264점, 토플 79점 이상						
	전 산 (3명)	응시분야의 기사 기술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술직 (19명)	토 목 (6명)	응시분야의 기사, 기술사, 건축사(건축직)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건 축 (8명)						
		기 계 (1명)						
		전 기 (1명)						
		조 경 (2명)						
		환 경 (1명)						

※ 모든 자격은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 하나의 채용직무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중복지원 시 모두 무효 처리하며, 추후 중복지원으로 판명 시 모두 불합격 처리함.

※ 가산대상 자격증 및 채용우대 지원자격 (붙임5)

- 가산대상 자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자격 하나만 가산함.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응시 직무의 가산대상 자격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함.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우대함.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직무별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어, 선발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가점 적용이 불가함. 다만 합격자에 대해 합격점수 및 순위 결정 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함.

2.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6. 9. 28.(월) ~ 10. 19.(월) 18:00	합격자 발표 : 2026. 11. 3.(화)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2026. 11. 7.(토)	합격자 발표 : 2026. 11. 17.(화)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및 인성면접)	2026. 11. 23.(월) ~ 11. 25.(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2. 1.(화)	임용예정일 : 2026. 12. 14.(월)

- ※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등 전형 안내는 채용 홈페이지(<https://sh.ai-recruit.kr>)를 통해서 진행
- ※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공사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함.

3. 전형절차

□ 원서접수

접수마감일에는 다수 동시접속에 따라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길 바라며, 작성 중이었던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 완료하지 못한(수험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19.(월) 18:00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sh.ai-recruit.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 ※ 하나의 채용직무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중복지원 시 모두 무효 처리하며 추후 중복지원으로 판명 시 모두 불합격 처리함.
- 접수 시 작성내용 : 응시원서, 역량기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증빙하는 각종 서류는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필수적인 최소한의 증빙으로 제출받을 예정(블라인드 채용 관련)

입사지원서 상의 성명, 생일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상의 성명, 생일이 한 글자라도 상이할 경우 시험(필기, 면접)에 응시할 수 없으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서류전형

- 전형내용
 - 지원자격 적격여부(공인영어성적, 필수자격증 등) 및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성실작성여부를 확인하여, 적격자에 대하여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불성실 작성 기준
 - 자기소개서 4개 항목 및 직무수행계획서 항목 중 2개 이상 동일 반복
 - 자기소개서 4개 항목 및 직무수행계획서 내 한 항목이라도 50% 미만 작성
 - 동일단어(문항) 반복 등 미작성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 블라인드 위배 및 공사이름 오기재 시 평가에 불이익 있음
 - ※ 역량기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추후 면접전형 자료로 활용

○ 평가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평가한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0배수 범위 내에서 필기전형 대상자 선발. 단,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하며,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나머지는 절사함.
- 고급자격증 소지자는 공인영어성적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필기시험 자격을 부여하나,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불성실 작성자와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평가결과에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자(과락자)는 제외하며, 합격인원은 배수 외 선발
- 서류전형 점수 배점

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100점	70점	30점

* 가산점 부여(만점의 40% 이상 득점 시)

: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주거복지사 자격증 소지자(3%),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1급 3%, 2급 2%)

※ 블라인드 채용 관련 안내

- 입사지원서 상 사진등록, 학교, 학업성적, 주소, 출생연도, 가족관계 기재란 없음.
- e-mail 기재 시 학교명 또는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계정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포함) 작성 시 나이,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드러나거나, 이를 유추 또는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 기재 금지
- 본인 경력 및 경험사항을 서술하기 위하여 근무기관명 등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1. 3.(화), 16:00 이후

- 채용 홈페이지(<https://sh.ai-recruit.kr>)를 통해 발표, 필기전형 일시·장소 등 안내

□ 필기전형(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일 자 : 2026. 11. 7.(토), 시간·장소는 별도 안내

○ 시험과목 (붙임6)

계	직무별 전공과목 (50문항)	직업기초능력평가(NCS) (50문항)	인성검사 (300문항 내외)
100점	50점	50점	적/부

※ 인성검사는 탈락 없이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

○ 합격기준

-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각 시험과목별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더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채용인원이 4인 이하인 직무의 경우 5배수) 범위 내 합격자 결정. 단,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하며,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나머지는 절사함.
- 전공과목과 직업기초능력평가(NCS) 결과,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과락)
- 전공과목의 경우 사무직 중 경영지원/사업관리 직무 및 기술직 중 토목, 기계, 전기 직무의 경우 전공과목간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분야별로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하며, 원점수와 조정점수 모두 과락기준에 해당할 경우 불합격 처리 (붙임7)

* 가산점 부여(만점의 40% 이상 득점 시) [붙임5 참고]

: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5%), 고급자격증 소지자(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5%)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1. 17.(화), 16:00 이후**

- 채용 홈페이지(<https://sh.ai-recruit.kr>)를 통해 발표
- 안내내용 : 지원자 본인의 필기시험 점수, 합격자 커트라인, 인성검사 결과(적격여부), (합격자)면접 일정 및 제출서류 등 안내

□ **필수서류 제출 안내**

- ※ 기간내 미제출자는 입사의사 없음으로 간주하여 면접전형 응시 불가
- ※ 지원서 상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면접전형 응시 불가 및 불합격 처리
- 대 상 : 필기전형 합격자
- 기 간 : **2026. 11. 17.(화) 합격자 발표 후 ~ 11. 20.(금) 18:00**
 - 증빙서류 제출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필기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
- 대상서류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자격증 외 대상서류는 접수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인영어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필수자격증, 고급자격증, 가점대상자격증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또는 상이등급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TOPIK 성적증명서(다문화가족 해당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직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공인영어성적,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으로, 허위의 내용 혹은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임용 후에도 당연 불합격 처분하며, 추후 입사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및 인성면접

-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입사지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검증결과 이상이 없는 자
- 기 간 : **2026. 11. 23.(월) ~ 11. 25.(수) 기간 중 1일**, 시간·장소는 별도 안내
- 전형내용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직무수행능력면접(PT·그룹토론융합)	문제해결, 언어구사, 직무전문성 등	50점
인성면접	가치관, 직업윤리 등	50점

○ **면접방식**

구 분	방 식
직무수행능력면접(PT·그룹토론융합)	직무관련 주제에 대해 지원자별로 발표 후 6인 이내의 지원자가 1조가 되어 지원자 상호간 토론 진행 후 질의 응답
인성면접	3인 이내의 지원자가 1조가 되어 지원자별 질의 응답

○ 합격기준

계	직무수행능력면접	인성면접
100점	50점	50점

- 직무수행능력면접과 인성면접의 각 면접유형별로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정점 중 최상 및 최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정점의 평균점수를 합산한 후 가산점을 부여한 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채용인원이 1명인 직무의 경우 3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단,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하며,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나머지는 절사함.

* 가산점 부여(만점의 40% 이상 득점 시) :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2. 1.(화)

- 채용 홈페이지(<https://sh.ai-recruit.kr>)를 통해 발표, 임용대상자 등록 등 안내

※ 면접점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 합격기준

- 면접전형 합격자 중에서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1배수 선발
- 본 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 :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인성면접 고득점순, ③직무수행능력면접 고득점순, ④직업기초능력평가 고득점순, ⑤전공과목 고득점순 ⑥인성면접 평가항목 연번순 고득점순, ⑦직무수행능력면접 평가항목 연번순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정하며, 각 점수는 가산점 제외 점수로 함.
- 지원서 작성내용 및 자격증 등 제출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여 허위의 내용이 작성·제출된 경우에는 추후에라도 불합격 처리

○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 발표 시 예비합격여부 및 예비 합격순위 발표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1배수 선정, 단 채용인원이 1명인 직무의 경우 2배수)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2027. 5. 31.까지 본 합격자의 임용 미등록, 결격사유 조회결과 부적격, 퇴사 발생 시 예비합격자 성적 순위에 따라 임용(별도 안내)

4. 기타 안내사항

□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 - '이의신청'에 신청내용 기재
-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사항

※ 이의신청 답변 예외 대상

- 이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5. 유의사항

- 지원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바랍니다.
-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공사 사정 및 감염병 방역지침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니 이 점 착오 없길 바랍니다.
- **학력과 연령 제한은 없으나(단,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어야 함), 최종 합격 시에는 재학 등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락불능,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또는 시험 부정행위자는 합격취소 처분은 물론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신원조회(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점수가산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제출처' 란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반드시 명시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인터넷 접수 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기 또는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면접전형 시 제출한 서류 관련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최종합격일 이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반환청구기간 내 요청 시 반환합니다.
- 수습임용 후 최대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운용하며 수습직원에게 대해 직무수행능력 등 평가 후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필기전형 장애인 편의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유형별 편의 지원내용(붙임8)을 참고하시어 원서접수 기간내에 지원서 '장애 등 편의지원 신청'란을 통해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전부개정고시」(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0호, 2026.7.31.)에 따라,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기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1항 제12의2호,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4항 및 인사혁신처의 「2026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에 의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전 임직원은 재산등록 대상자로서, 신규임용직원은 최초 재산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용 후 별도안내 예정)
- 기타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1:1 문의 게시판' 및 채용 문의 콜센터(T.070-5223-1887, 070-5223-1888, 070-4919-6616)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필기

시험범위 등)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8.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붙임1】 채용직무별 필수자격

직 종	채용직무	직무별 필수 자격증
사무직	경영지원/ 사업관리	별도 자격증 없음
	전 산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통신, 정보보안) 또는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술직	토 목	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또는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도시계획, 상하수도)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건 축	기사(건축, 실내건축) 또는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또는 건축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 계	기사(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일반기계, 소방기계) 또는 기술사(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소방)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 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정보통신, 소방설비) 또는 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정보통신, 소방)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조 경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또는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환 경	기사(수질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생물분류,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또는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붙임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에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 취소 또는 직권면직, 해임,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붙임3]

공인영어성적 듣기점수 적용 제외 청각장애 대상범위 안내

청각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기존 2·3급)과 실질적으로 듣기시험 점수 확보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듣기시험 점수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어학능력시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어학능력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대상 기준

○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①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 ②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기존 2·3급)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2. 사무기술직 신입사원 채용 어학시험 기준

구분		토익(TOEIC)	텡스(TEPS)	토플
사무직	일반	800	309	91
	듣기점수 적용 제외대상	400	186	45
기술직	일반	700	264	79
	듣기점수 적용 제외대상	350	159	39
장애인 제한경쟁	일반	500	195	56
	듣기점수 적용 제외대상	250	117	28

* 모든 어학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일(2026.12.1.)까지 유효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으로, 2024.12.1. 이후에 응시하고 지원서 접수 마감(2026.10.19. 18:00) 이전까지 성적을 발표한 시험에 한함.

(단,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한 경우에는 2021.12.1.이후 응시한 어학성적 인정)

* 듣기점수 적용 제외대상의 경우 듣기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합계를 적용함

3. 제출 서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2·3급)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

①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 원본*** (의사 소견서 불인정)

* 2024.1.1. 이후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 (공무원 시험 기준 준용)

② **(발급기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③ **(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 (가)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 예시표 표시① 내용
- (나)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예시표 표시② 내용
 - *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에 따라 검사
- (다)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 예시표 표시③ 내용

【 참고 :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상기인은

- ①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를 검사한 결과,
- ②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이상이며,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인 사람으로서
- ③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 **(신청·제출 : 응시자)**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선택하고,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진단서 원본 등을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 등록 및 제출

5. 유의사항 등 안내

- 어학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 의사 진단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채용시험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4】 고급자격증 소지자

구 분	지 원 자 격
고급자격증 소지자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u>변호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u>공인회계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한 <u>세무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u>감정평가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u>법무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u>공인노무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술사법』 제2조의 <u>기술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u>건축사</u> 자격을 취득한 자

【붙임5】 가산대상 자격 및 채용우대 지원자격

○ 채용우대사항

구 분		우대사항 (가산점 비율 등)	확인방법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국가보훈부 발급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모든 자격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게 가산점 부여 -가산점 대상 자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하나만 가산점 부여함.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산점 대상 자격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직무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따라서 채용직무별로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취득한 점수로 각 전형을 통과한 경우에만 합격 결정이 가능하며, 다만 합격점수 및 순위는 가점한 점수로 결정함.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의 경우 TOPIK 5급 이상 취득자에 한함)		필기시험 만점의 5%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TOPIK성적표(해당자)	
북한이탈주민		필기시험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고급 자격증 소지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건축사	서류전형 면제* (입사지원 시 공인 영어성적 불필요), 필기시험 만점의 5% *불성실 작성자 및 과락자 제외	자격증 사본	
주거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3%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2%(2급) 또는 3%(1급)	자격증 사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직 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		필기시험 만점의 5%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채용우대 지원자격 상세내용

구 분	지 원 자 격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문화가족 (가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만 지원 가능 - 국적 취득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자(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북한이탈주민 (가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고급자격증 소지자 (가점)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u>변호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u>공인회계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한 <u>세무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u>감정평가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u>법무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u>공인노무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술사법』 제2조의 <u>기술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u>건축사</u> 자격을 취득한 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직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 (가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직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 단, 지원분야의 필수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붙임6】 필기시험 과목

채용직무		전공 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인성검사	비 고
사무직	경영지원 /사업관리	법 학 : 법학 전반 행정학 : 행정학 전반 경영학 : 경영학 전반(회계분야 제외) 경제학 : 경제학 전반 회계학 : 회계학 전반 중 택1	① 직업기초능력평가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② 인성검사	- 전공 출제문항 : 과목별 50문항, 객관식 5지선다형 - 직업기초능력평가 출제문항 : 총 50문항, 객관식 5지선다형 - 인성검사 : 300문항 내외
	전 산	전산학 전반		
기술직	토 목	토목공학 : 토목공학 전반 도시계획학 : 도시계획학 전반 중 택1		
	건 축	건축공학 전반		
	기 계	기계공학 전반 건축설비공학 전반 중 택1		
	전 기	전기공학 : 전기공학 전반 전자(정보통신)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전반 중 택1		
	조 경	조경학 전반		
	환 경	환경공학 전반		

※ ‘직업기초능력평가’ → ‘직업공통능력’ 으로의 개편사항은 2027년 채용부터 적용 예정

【붙임7】

신입사원 채용시험 조정점수 안내

사무직 중 경영지원/사업관리 직무 및 기술직 중 토목 직무, 기계 직무, 전기 직무 응시생들은 전공과목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점수제를 시행합니다.

조정점수란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 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변환한 점수로, 과목 간 난이도에 따른 점수 차이를 보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과목의 경우 평균이 낮으므로 조정점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난이도가 낮은 과목은 조정점수가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정점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조정점수} = \left\{ \frac{(\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right\} \times 10 + 50$$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계}}{\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응시인원수} - 1}}$$

조정점수제 Q&A

1. 과락기준(만점의 40% 이상)은 어떻게 정하는지?

-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 이상일 경우(40점 이상) 과락을 면한 것으로 봅니다.

(예시) 경영학 : ① 원점수(35점), 조정점수(41점) → 과락 아님
② 원점수(40점), 조정점수(37점) → 과락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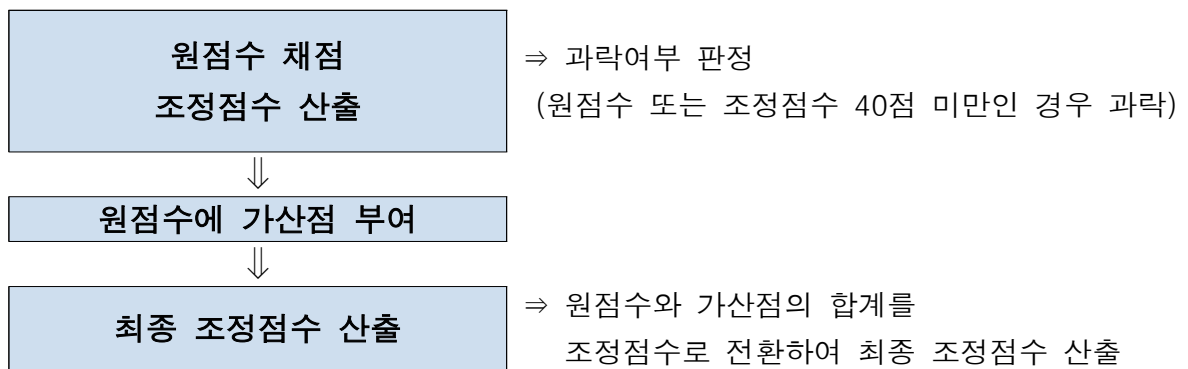
2. 가산점 부여시기 및 부여 절차는?

- 원점수에 먼저 가산점을 더한 후 이를 조정점수로 전환해 최종 성적을 산출합니다.
-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전환한 후에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과목 간 가산점이 상이하고, 과목 내 원점수 순위가 변동되는 문제 발생(조정점수를 도입하더라도 과목 내 순위는 동일해야 함)

< 예시 >

구분	원점수 (가점) A	순위	원점수+가점 ⇒조정점수 B	순위	원점수 ⇒조정점수+ 가점 C	순위
가	91(1)	1	67.76	1	68.82	2
나	90(0)	2	67.33	2	67.82	3
다	85.5(10.5)	3	65.40	3	71.77	1

- 원점수에 먼저 가산점을 더한 후 조정점수로 전환하는 B의 경우 원점수와 순위는 동일,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전환한 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C의 경우는 순위 변동
- 가산점 부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조정점수 산출 시 원점수 100점이 70점이 되는 등 점수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 조정점수는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 상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으로 조정점수의 크기는 과목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따라서, 조정점수 산출 시 반드시 점수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며, 평균, 표준편차, 개별 수험생의 성적에 따라 상승할 수 있습니다.

【붙임8】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 기타 외에는 '장애인증명서' 필수 첨부 요망

※ 원서접수기간 내에 '장애 등 편의지원 신청'란을 통해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장애유형			편의 지원 항목	제출서류	비고
지체 장애	상지 지체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 지참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답안지 대필	—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	기존 4~6급
	하지 지체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심하지 않은 사람	■ 휠체어 전용책상 ■ 별도시험실 배정	—	기존 1~6급
뇌병변 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 지참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답안지 대필	—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의사 진단서(원본)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	
시각 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의사 진단서(원본)	기존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도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도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1.5배 연장	—	기존 3급 1,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방향에서도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의사 진단서(원본)	기존 4급 2호
		두 눈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1.5배 연장	—*	기존 4,5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의사 진단서(원본)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	기존 5급 2호, 6급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심하지 않은 사람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기존 2~6급
기타	임신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 별도시험실 배정	■ 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과민성 대장 · 방광증후군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 별도시험실 배정	■ 의사 진단서(원본)	

* 해당 항목 장애유형(기등급)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